商標와同一또는類似한것을營業用廣告、看板、標札또는去來書類等에使用한行爲

第三十條 權利侵害를받은登錄商標權利人은侵害人이그商標가이미登錄된事實을알었을境遇에限하여侵害行爲에依한侵害人의利得과權利人의損失또는代理人의報酬에對하여그賠償을請求할수있다

第二十七條에依한登錄表示가있으면侵害人은그商標가이미登錄된事實을알았던것으로推定한다

法院은證明된損害額을根據로適當한賠償額을定할수있으나그全額은損害額의三倍를超過할수없다

法院은登錄商標權利人의請求에依하여損害賠償에代身하여또는損害賠償과함께商品또는營業의信用을回復시키는適當한措置를命할수있다

第三十一條 營利를目的으로하지아니하는業務를經營하는者가그取扱하는商品에標章을使用코저할때에는그標章의登錄을할수있다

前項의標章은商標로看做하여本法中商標에關한規定을適用한다

第三十二條 左의各號의一에該當하는者는五年以下의懲役이나二千圓以上五十萬圓以下의罰金에處한다

一、宣誓한證人、鑑定人또는通譯이特許局에對하여虛僞의陳述을한者

二、虛僞의手段으로商標의登錄을받거나받으려고한者

三、第二十九條各號에該當한行爲를한者

四、登錄을하지아니한商標를登錄商標인것같이商品에使用하였거나營業用廣告、看板、標札及其他商業用去來書類等에使用한者

第三十三條 特許局長은商標登錄簿에登錄한事項을特許法第十四條에依하여發行하는特許局公報에公告하고登錄商標權利人또는그承繼人에게通知하여야한다

第三十四條 特許局長은本法에依하여登錄한商標其他節次에關한書類를따로定하는바에依하여保存하여야한다

前項의書類는特許局長의許可가없으면外部에持出할수없다

第三十五條 特許局長은本法에依하여有効한登錄의目錄을記載한商標年報를發行한다

特許局長은商標年報를特許法第十六條第四號에依한特許局年報와合하여發行할수있다

第三十六條 本法施行規則은大統領으로定한다

登錄料、出願請求其他節次에對한手數料와그納付方法其他本法에規定이없는事項에關하여서는前項에施行規則으로서定한다

附　則

第三十七條 本法은公布日로부터施行한다

第三十八條 本法이施行된날부터從來의商標에關한法令은廢止하고從前의法令에依한商標登錄은效力이없다但從前에法令에依하여登錄된商標로서檀紀四二七四年十二月七日現在有效한것은本法施行後一年以內에本法에依하여그登錄을出願한때에는第三條와第五條第十一號의規定에不拘하고登錄하며그登錄은本法施行日에登錄된것으로看做한다

株式會社 大韓印刷公社 印刷

을때에는當該節次를밟을수있는날로부터四十日以內에그要節次를具備하여回復을請求하거나그要節次를追完한때에는特許局長은그怠慢의結果를免除할수있다 但期間滿了된날부터六個月이經過한때에는例外로한다

第十二條 特許局長은請求에依하여또는職權으로써外國이나遠隔또는交通不便한地方에居住하는者를爲하여本法에依한節次의法定期間을延長할수있다

第十三條 商標는登錄된다는査定을通知한날부터九十日以內에商標登錄簿에登錄함과同時에그登錄證을出願人에게交付한다

第十四條 登錄出願書類、商標登錄簿、抹消또는訂正請求書等本法에依한節次書類는別로히定하는바에依하여公開하여야한다 但그拒絶또는拋棄된書類는除外한다

第十五條 登錄된商標權利人은따로定하는分類表에依하여指定된商品또는營業에그商標를專用할權利를가진다

第十六條 商標는그登錄與否를不問하고營業과같이하지아니하면이를移轉할수없다

聯合商標權은分離하여移轉할수없다

共有인商標는共有者全員의承諾이없으면그持分을讓渡할수없다

登錄商標의承繼는그登錄이없으면第三者에對抗할수없다 出願된商標의承繼에對하여出願人名義變更의申告가없을때또한같다

第十七條 商標登錄은登錄한날부터十年間有效하다 但更新登錄의出願에依하여다시十年間·更新할수있다

更新된登錄은原登錄이끝나는날부터效力이있다

第十八條 登錄出願또는更新登錄出願이最後拒絶되었을때에는抗告審判을請求할수있다

第十九條 登錄商標權利人은登錄또는更新登錄有效期間中언제든지指定된것과同一分類表內의商品또는類似한營業을追加하는訂正登錄을出願할수있다

第二十條 登錄商標權利人은登錄또는更新登錄의有效期間中登錄抹消나指定된商品의一部抹消를請求할수있다

第二十一條 出願人과그代表者나代理人의過失또는豫測할수없는事由로登錄에錯誤가生한것이明白히되었을때에는登錄證을添付하여訂正申請을하면特許局長은登錄證에添付할訂正證書또는新商標登錄證을交付하여야한다

特許局의過失로因한登錄의錯誤가特許局의記錄其他書類에依하여判明되었을때에는特許局長은職權으로써訂正하고商標登錄證에添付할訂正證書또는新商標登錄證을다시交付하여야한다

訂正한商標登錄證은訂正한形式으로써처음부터交付한것과같은效力이있다

第二十二條 商標權은商標權利人이그營業을廢止하였을때에는그날로부터消滅된다

第二十三條 登錄商標權利人이左의各號의一에該當할때에는審判에依하여그商標의登錄을取消한다

一、自己商標와同一또는類似한商標로써指定된商品과同種의商品에他人이使用하는것을默認하였을때

二、正當한理由없이商標를繼續하여一年以上營業에使用하지아니하였을때 但混合商標인境遇에는其中一商標라도使用하였을때에는例外로한다

三、故意로商標에商品의誤認混同을생기게할念慮가있는附記또는變更을하여使用할때

四、商標權을移轉한境遇그移轉日부터一年以內에移轉登錄을申請하지아니하였을때 但相續의境遇는例外로한다

第二十四條 商標의登錄이그消滅의前後를不問하고左의各號의一에該當할때에는審判에依하여無效로한다

一、登錄이第一條乃至第三條、第五條、第六條、第十六條의規定에違反되었을때

二、第二十三條의規定에該當할때

三、登錄이虛僞로된때

四、最先使用이아닌者의商標가登錄되었을때 但第三十八條에依하여登錄된때에는例外로한다

第二十五條 商標登錄의利害關係者와審査官은登錄의無效또는取消와商標權의範圍確認의審判을請求할수있다 但第五條第九號乃至第十二號와第二十四條第四號의境遇에는그利害關係者만이四年以內에限하여審判을請求할수있으며商標權의範圍確認에對하여는審査官은그審判을請求할수없다

第二十六條 第十八條、第二十三條乃至第二十五條및第三十八條規定의審判에關하여서는特許法第十一章乃至第十三章의審判、抗告審判과再審의規定을準用한다

第二十七條 本法에依하여登錄된商標를가진者는그登錄商標임을一般이알도록「등록상표」또는「등록영업표」라는登錄表示를하여야한다

前項의表示는登錄商標에附記하며普通視力으로써읽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第二十八條 特許法第六十二條、第百二十一條、第百六十四條乃至第百六十九條、第百七十一條、第百七十四條、第百八十五條乃至第百八十七條、第二百二十一條、第二百四十七條의規定은商標에關하여準用한다

第二十九條 左의各號의一에該當한行爲는登錄商標權利人의權利에對한侵害이다

一、他人의登錄商標와同一또는類似한商標를同種의商品에使用한行爲

二、前號의商品을交付、販賣하거나交付、販賣의目的으로輸入또는所持한行爲

三、他人의登錄商標와同一또는類似한商標를同種의商品에使用케할目的으로交付、販賣하거나交付、販賣의目的으로所持한行爲

四、他人의登錄商標와同一또는類似한商標를同種의商品에使用할目的이나、使用케할目的으로輸入한行爲

五、他人의登錄商標를同種의商品에使用할目的이나、使用케할目的으로僞造또는模造한行爲

六、他人의登錄商標를僞造또는模造할目的이나、僞造또는模造케할目的으로그用具를製作、交付、販賣또는所持한行爲

七、同種의商品에關하여他人의登錄

八八

(檀紀四二八一年十月二十七日第三種郵便物認可)

官報

號外

檀紀四二八二年十一月二十八日

大韓民國政府公報處 發行

法律

國會의議決로確定된商標法을이에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

檀紀四千二百八十二年十一月二十八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範奭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權承烈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尹潽善

法律第七十一號

商標法

第一條 本法에서商標라함은商品을表示하는것으로서生産、製造、加工、證明또는販賣業者가自己의商品을他業者의商品과識別시키기爲하여使用하는記號文字、圖形또는그結合의特別顯著한것을말한다

營業標라함은營業을하는者가廣告、包裝物、容器、文房具其他事務用品等에表示하는것으로서自己의營業을一般에게識別시키기爲하여使用하는記號、文字、圖形또는그結合의特別顯著한것을말한다

前項의營業標에對하여는本法中商標에關한規定을適用한다

第二條 國內에서商標를正當히營業上使用하는者는本法과本法에依하여發하는命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自己의商標를商標登錄簿에登錄할수있다

第三條 同種의商品에使用할同一또는類似한商標에對한二以上의登錄出願이競合하였을때에는營業上最先使用者에限하여登錄한다

最先使用의事實을確認하기困難한二以上의出願에對하여서는最先出願者를登錄한다

前項의出願이同日에競合한때에는各出願者의協議에依하여그中一人만을登錄하며協議가되지아니한때에는抽籤에依하여決定한다

第四條 商標登錄簿에는商標를表示하고登錄商標權利人의住所나居所、姓名또는名稱、指定된商品에對하여그商標의營業上最初使用한日字、登錄出願日字、登錄番號와登錄의有效期間을記載하며商標權의移轉、變更、消滅其他法令에定한事項을登錄한다

第五條 左의各號의一에該當하는商標는登錄할수없으며이미登錄된것도更新할수없다

一、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서울特別市와道의標章、外國의國旗、國章또는赤十字의稱號、文字또는記章과同一또는類似한것

二、國家、民族、團體또는宗教와의關係를虛僞로表示하거나이를誹謗또는侮辱하거나惡評을받게할念慮가있는것

三、政府에서開設하거나政府의許可를얻어開設하는博覽會또는外國의官設이나官許의博覽會의賞牌、賞狀또는褒章과同一또는類似한圖形을表示한것 但그賞牌、賞狀또는褒章을받은者가그商標의一部로서使用할때에는例外로한다

四、秩序또는風俗을紊亂하게할念慮가있는것

五、同種의商品에널리慣用하는標章과同一또는類似한것

六、商品의性質만을說明하거나商標를使用할商品의그림만을表示한것

七、顯著한地理的인名稱、圖面、略語또는記號만으로된것

八、商品을誤認混同시키거나欺瞞할念慮가있는것

九、他人또는故人의名譽또는信用을毁損하거나他人또는故人과의關係를虛僞로表示한것

十、他의姓名、名稱또는商號、肖像、署名또는印章과同一한것 但그他人의承諾을얻은것은例外로한다

十一、他의登錄商標와同一또는類似한商標로써同種의商品에使用하는것

十二、登錄失效日부터一年을經過하지아니한他人의商標와同一또는類似한商標로써同種의商品에使用하는것 但他人의商標가失效前一年以上使用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例外로한다

同種商品에使用할自己의商標로서로類似한것은聯合商標로만登錄할수있다

第六條 國內에住所또는營業所를두지아니한外國人은本法에依하여商標에關한權利를享有할수없다 但條約協定또는法律에依하여우리國民에게自國內의住所또는營業所의有無에不拘하고그權利를許與하는國家의國民에對하여서는例外로한다

第七條 特許法第五章各條 代理人과代表者에關한規定은商標에對하여이를準用한다

第八條 登錄出願은審査官이審査하여拒絶할理由가없을때에는登錄된다는査定을하고出願人에게通知하여야한다

第九條 審査官은登錄出願이拒絶될理由가있다고認定한때에는出願人에게書面으로通知하여야한다

出願人은登錄拒絶理由의通知를받은날부터四十日以內에異議書를提出할수있다

異議書에는出願의訂正拒絶理由에對한異議陳述、새로운宣誓와證明方法을添附할수있다

審査官은異議書에對하여審査한後登錄出願을拒絶할것이라고認定한때에는最後拒絶을書面으로通知하여야한다

第十條 出願書類가그最初提出日로부터四十日以內에完備되지아니하였을때前條第二項의異議書를所定期日以內에提出하지아니하였을때또는其他節次를밟은者가그爾後에한節次에對하여法定또는指定期間을怠慢하였을때에는그出願과其他節次는이를抛棄한것으로看做한다

第十一條 前條法定또는指定期間의怠慢이容許할수있는障碍에因한것으로認定된때또는出願其他節次를밟은者가當事者에歸責할수없는事由에因하여特許法第百八十九條、第二百三條、第二百七條또는民事訴訟法第四百十五條에規定한期間을遵守하지못하였